대구환경공단 정관 [2000. 5. 25 정관 제1호]

개정 2000. 10. 20 정관 제 2호
2000. 12. 1 정관 제 3호
2001. 10. 30 정관 제 4호
2002. 4. 1 정관 제 5호
2002. 4. 1 정관 제 6호
2002. 7. 26 정관 제 7호
2004. 12. 10 정관 제 8호
2005. 3. 29 정관 제 9호
2006. 1. 4 정관 제10호
2006. 10. 4 정관 제11호
2008. 12. 3 정관 제12호
2009. 11. 2 정관 제13호
2011. 12. 15 정관 제14호
2012. 4. 2 정관 제15호
2013. 3. 12 정관 제16호
2013. 12. 30 정관 제17호
2014. 11. 3 정관 제18호
2016. 8. 22 정관 제19호
2016. 11. 1 정관 제20호
2017. 12. 22 정관 제2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 등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초환경시설과 이와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0)

제2조(명칭) 공단은 대구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Daegu Environmental Corporation (약호 D-ECO)이라 한다.(개정 2013. 12. 30)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6,000억원으로 하고 현금 또는 현물을 포함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 2 장 사 업

제7조(사업의 범위)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6. 11. 1)

1.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업(개정 2016. 11. 1)
2.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사업
3.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사업장 등 청소시설 관리·운영사업
4. 음식물쓰레기하수병합처리시설 관리・운영사업(개정 2004. 12. 10)
5.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사업(신설 2011. 12. 15)(개정 2016. 11. 1)
   [종전 5호는 6호로 이동 (2011. 12. 15)]
6.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고화처리장 관리·운영사업(신설 2012. 4. 2)
   [종전 6호는 7호로 이동 (2012. 4. 2)]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의 환경관련사업 및 위탁사업(개정 2011. 12. 15, 2012. 4. 2, 2016. 11. 1)
   [5호에서 이동 (2011. 12. 15)][6호에서 이동 (2012. 4. 2)]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시운전 및 부대사업(개정 2008. 12. 3, 2011. 12. 15, 2012. 4. 12)
   [6호에서 이동 (2011. 12. 15)][7호에서 이동 (2012. 4. 2)]
9. 기타 시장 등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1. 12. 15, 2012. 4. 2)
   [7호에서 이동 (2011. 12. 15)][8호에서 이동 (2012. 4. 2)]

제8조(사업계획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업의 집행)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 10. 30, 2016. 11. 1)

1. 공공하수처리시설·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 기본계획(개정 2004. 12. 10.

2016. 11. 1)

2.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6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1인을 둔다.(개정 2008. 12. 3, 2017. 12. 22)

②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1)

1. 상임이사는 이사장, 본부장 2인으로 한다.(개정 2017. 12. 22)
2.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면한다. 다만, 시 기획·예산부서 실장, 환경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개정 2002. 7. 26, 2017. 12. 22)
   가. 환경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삭제 〈2009. 11. 2〉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기업경영에 관한 전문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09. 11. 2)
3.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수를 비상임이사 전체의 수 3분의 1이하로 한다.(개정 2008. 12. 3)

③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12)

④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2013. 3. 12)

제11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9. 11. 2)

② 삭제〈2006. 10. 4〉

③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09. 11. 2)

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신설 2009. 11. 2)

제12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⑥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0. 30]

제13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09. 11. 2)

②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신설 2009. 11. 2)

③경영관리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경영지원처·미래 전략처 업무를 관장하고, 사업운영 본부장은 운영지원처, 신천·서부·달서천·북부· 동부·달성·성서사업소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9. 11. 2, 2017. 12. 22)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개정 2012. 4. 2)

1. 법인 재산상황 감사(신설 2012. 4. 2)
2. 법인의 사업, 회계 및 업무전반 감사(신설 2012. 4. 2)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신설 2012. 4. 2)
4.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이사회에 보고(신설 2012. 4. 2)
5. 필요시 이사회 소집 요구(신설 2012. 4. 2)
6.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신설 2012. 4. 2)

제14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4. 11. 3, 2016. 11. 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06. 1. 4, 2014. 11. 3)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14. 11. 3)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신설 2014. 11. 3)

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교육·훈련) 공단은 직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개정 2016. 8. 22)

제19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이사장 또는 이사는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20조(임·직원의 보수) ①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09. 11. 2)

②비상임 이사와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 업무수행과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 11. 2)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 11. 1)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 사채의 발행·상환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위탁 등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의장 및 소집) ①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신설 2009. 11. 2)(개정 2014. 11. 3)

②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3월, 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8. 12. 3, 2009. 11. 2, 2014. 11. 3)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3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

제27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5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삭제 〈2008. 12. 3〉

③제25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하기 곤란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29조의1(운영규정등) 상기 이외의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 11. 2)

제 5 장 재무회계

제3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1조(예산과 결산) ①공단은 매 연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로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

③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계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

제33조(손익금의 처리)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사업준비금 등을 위한 적립금 적립

②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34조(기금설치) 이사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및 귀속) 공단 재산의 관리·처분·귀속 등에 대하여는 공단이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사채발행 및 기채

제36조(사채발행) ①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사채를 상환함에 있어 시장의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단이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④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

1. 사채의 번호
2. 발행년월일
3. 제3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제37조(차관) ①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외국차관을 상환함에 있어 정부 또는 시장의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자금 차입)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 또는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제 7 장 조직 및 정원

제39조(조직 및 정원) 공단의 조직과 정원 및 업무분장은 직제규정에 의한다.(개정 2006. 1. 4)

제 8 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1. 2)

제41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공단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공단의 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시 출자 및 관리위탁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 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지정 및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연도 예산) 공단의 설립연도 예산은 공단 설립일 기준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00. 10. 20)

이 정관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12. 1)

이 정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0. 30)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4.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할 당시에 계약직 현원이 있거나, 계약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계약직의 정원은 종전의 정원과 같은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2. 7. 26)

이 정관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12. 1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3. 29)

이 정관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1. 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10. 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12. 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4.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경과조치) 고화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3. 3.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12. 30 정관 제17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등기부 등 기타 공부상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의 명의는 대구환경공단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정관에 따른 대구환경공단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4. 11.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8. 2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11. 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12. 22 정관 제2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복수본부 설치는 상임이사 추가 임명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전무이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정관에 따른“경영관리업무 분야는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사업운영업무 분야는 “사업운영 본부장”으로 각각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삭제 〈2006. 1. 4〉

(별표 2) 삭제 〈2006. 1. 4〉